



이야기가 있는 회계여행

외부회계감사와 내부감사

안세회계법인 이사

고영일



2009년 IMD(국제경영개발원) 평가 한국회계신인도는 57개국 중 39위, WEF(세계경제포럼)가 평가한 한국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강도는 133개국 중 58위였다. 그리고 2009년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33개국 중 19위였다. 이 발표의 신뢰도나 조사방법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회계 및 감사분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6위, 홍콩은 9위, 대만은 36위이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는 43위, 태국 52위, 아프리카의 이집트 50위, 짐바브웨는 55위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경제 및 사회발전의 격차가 깨 큰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IMF 금융지원을 받던 시절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의 회계처리 및 감사결과를 불신하여 자국의 회계처리기준을 토대로 자국의 회계법인이나 미국의 유력한 회계법인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한 재무보고정보를 재작성하여 검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투명성이 취약하다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외부로부터도 상당히 낮은 평가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회



•• 이야기가 있는 회계여행

계분야는 허위회계처리와 부실감사와 관련한 보도가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곤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양적 성장에 맞춘 질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리, 법·제도, 정책, 준법의식, 글로벌 시민가치관 등등이 급속한 양적 성장을 뒷받침 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은 우리의 국력과 기업들이 주변부에 있었고 이해관계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적 부문이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양적인 부분을 위협하게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정부와 기업에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 공기업, 상장기업,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재무보고의 충실했화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한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기준과 제도만 만든다고 회계의 투명성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내부통제제도, 담당인력의 전문성, 구성원 의식 및 조직문화, 정부 당국의 감독,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내·외부감사 등 운영 측면이 효율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투명성 제고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측면 중 내·외부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내부감사는 조직이 자체적으로 조직 내부에 수립한 평가업무를 의미하며,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 경영의 효율성 및 각종 경영정보의 적정성 등을 감사, 평가 및 감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내부감사의 범위와 목적에는 재무정보와 경영정보의 조사,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검토, 경영자의 정책·지시사항, 기타 내부요구사항, 법규 및 기타 외부요구사항 등의 준수 여부 검토, 비재무적 통제를 포함한 경영의 효율성, 효과성 및 경제성의 검토를 포함한다. 이러한 내부감사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내부감사의 역할과 기능이 경영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내부감사인은 조직의 일부이므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둘째, 적격한 기술적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능력을 겸비한 전문감사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하다. 셋째, 내부감사의 조직상 위치가 최고경영자나 감사 직속으로 있지 않거나 인사상의 불이익 제거에 충분하지 않아 내부감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넷째, 내부감사와 관련한 적절한 규정, 감사절차지시서, 감사조서, 교육훈련 등 감사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이행감사 및 적발감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내부감사인의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예방감사, 개선감사, 컨설팅



감사는 상당히 미흡하다.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한 외부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외부회계감사는 고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 여부를 평가하거나 장래 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후적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 셋째,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주어진 환경 하에서 수행된 감사절차가 적절하였으며 감사보고서는 그러한 감사절차의 결과에 근거하여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넷째,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열람·등사·제출받은 회계에 관한 장부, 서류, 자료 등의 문서가 진실하다고 신뢰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내부공모, 위조 또는 변조 등 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판단은 재무제표 감사의 범위가 아니다.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 등 재무제표의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감시관련 감사문제를 고려하고, 이를 내부감시기구와 적시에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과 효과적 감사접근방법의 개발에 도움을 얻기 위해 회사의 내부감사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감사업무가 외부감사의 특정 분야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단계에서 내부감사의 기능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감사의 특정 업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감사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부회계감사는 외부에 의해 수행되는 일회성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어 감사대상 조직자체, 수행 사업, 조직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감사의 실질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내부감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회계분야 및 경영 효율·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상당수의 감사대상 조직에게 있어서 외부회계감사는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만을 표명하고 거액의 감사수수료를 챙겨가는 준조세와 같은 규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기업들의

•• 이야기가 있는 회계여행

줄기찬 요청에 의하여 2009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종전의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 으로 상향 조정되어 감사의무 대상기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내부감사는 감사환경 및 감사대상업무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감사가 자의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며 감사과정이나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의 반발과 갈등이 빈번하여 감사의 수용도가 낮다. 그리고 조직의 투명성과 사업의 효과·효율성을 높이려 하기 보다는 조직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물타 기성이나 핵심사항이 아닌 현상적이고 단편적인 감사를 한다는 외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내·외부감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실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자의 공공조직 감사실장 시절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조직 스스로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내부감사조직과 같은 내부모니터링제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감사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감사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흔히들 내부감사 업무 하면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직급이 높은 조직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무리없이 수행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한다. 이는 감사를 OX 식의 일차원적이고 평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관리통제 사항을 내부감사에서 다시 검증하는 것은 낭비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내부감사의 본질적 목표는 경영관리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및 개선이므로 내부감사를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업무 자체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해당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실무지식과 경험, 창의적 사고, 문제의식, 커뮤니케이션, 문서작성, 갈등관리 등 고차의 종합적인 능력을 요한다. 따라서 내부감사인은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모순적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정부 지정 수임제도를 채택하다가 5공화국 시절 미국 제도를 따라 자유계약 수임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수임자격 가이드라인도 없어졌다. 이런 결과 덤핑감사계약과 재계약 및 계약 유지를 위해 감사대상조직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감



독기관의 사후감리를 통해 감시와 제재를 가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의 양극화가 심하여 대형회계법인은 부가가치가 높고 안정적이며 감사위험이 낮은 대형·우량 감사대상조직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회계법인은 부가가치가 낮고 불안정하며 감사위험이 높은 영세한 감사대상조직을 감사하고 있다. 쉽게 말해 중소회계법인은 대형회계법인이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여 버리는 감사대상조직을 율며 겨자먹기로 수임하는 꼴이다. 이러니 각종 제재조치가 집중되는 곳은 중소회계법인일 수 밖에 없다. 중소회계법인에도 대형회계법인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회계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대형회계법인 보다도 우수한 인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다. 회계감사의 장기 계약과 자유계약 수임제가 보장되어 있고 간판효과가 존재하는 현 회계감사시장에서는 대형회계법인의 독과점이 불가피하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중소기업 육성 보호 업종 및 품목이 있듯이 회계감사시장에서도 일정 자산 및 매출액 미만의 감사대상은 대형회계법인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이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해의 당사자인 회계법인과 감사대상조직이 직접 계약을 맺어 감사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자유계약 수임제는 회계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이 계약과정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등의 지정적 속성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인이 서로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여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얻어야 한다. 필자는 과거 공적조직의 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회계법인의 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내부종합감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시도를 했었다. 즉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팀과 감사실 내부인력을 통합하여 종합감사반을 편성하고 외부회계감사인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문에 내부감사인력과 함께 투입되어 협업감사를 수행토록 했다. 이러한 결과 외부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냄으로써 회계법인과 감사대상조직 공히 감사 만족도가 높아졌고 감사대상조직 내부적으로도 외부감사전문가의 OJT를 통해 내부감사인력의 감사수행 전문성이 높아졌고 고급감사실무기법을 체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조직내부의 중복 감사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도 경감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었다.

•• 이야기가 있는 회계여행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내부감사인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그 조직에서 오래 근무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직급이 높다는 것 만으로는 감사인으로서의 적격성이 거의 없다.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건전한 윤리의식, 정직성 및 성실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감사대상업무, 감사실무기법, 문제해결, 감사윤리와 자세, 커뮤니케이션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단지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 기준에 입각한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용 감사가 아니라 감사대상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감사 실시과정에서 이를 적극 활용 감사대상조직의 감사 및 비감사적 욕구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감사대상조직의 신뢰와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감사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기관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 및 감사 투명성 수준을 보면 요즘 한창 유행인 국격, 국가브랜드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팔아 화폐 기준 경제력 순위가 높아도 윤리와 투명성 등 비화폐적 기준에서 불신을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선진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경쟁력은 정체되어 강소 국가로 가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우리가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의 감사보고서가 미국의 유력 회계법인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품질관리를 받아야만 국제적인 신뢰와 인정을 얻는 종속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회계 및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 국제회계기준의 조기 정착,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및 전문화, 감사의 독립성 확립 및 충실화 등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